

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7. 2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및 동법 시행령이 2006. 1. 1.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
 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(안 제5조의2)
 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(안 제5조의3)
 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(안 제5조의4)
 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 및 수당(안 제5조의5)
 -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(안 제9조)

3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(제정 2005.8.4, 법률 제7664호) 제8조 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및 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(제정 2005.12.28, 대통령령 제19197호) 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)

4. 조 례 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6. 기타사항

- (1) 입법예고(2007. 1. 18. ~ 2007. 2. 7)결과, 특이사항 없음
- (2)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·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7.02.14)
- (3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 133조”로 한다.

제5조 다음에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①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
2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3. 기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된다

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기획예산과장, 재무과장
2.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2인

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의3(위원장의 직무)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

③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, 출석위원의 직·성명,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.

제5조의4(회의)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.

제5조의5(간사 및 수당)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.

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제1항중 “매 회계연도마다”를 “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”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”를 “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”로 하고, “제출하여야 한다”를 “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 설>	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, 출석위원의 직·성명,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.
<신 설>	제5조의4(회의)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.
<신 설>	제5조의5(간사 및 수당)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.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제9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	제9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-----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----- ②-----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----- -----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2. 28.

북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. 2. 16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7. 2. 20.

다. 상정일자 : 제12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07.2.28)

상정, 심사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황동연 청소행정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및 동법 시행령이 2006. 1. 1.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
 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(안 제5조의2)
 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(안 제5조의3)
 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(안 제5조의4)
 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 및 수당(안 제5조의5)
 -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(안 제9조)

다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(제정 2005.8.4, 법률 제7664호)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및 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(제정 2005.12.28, 대통령령 제19197호) 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)

3. 검토보고의 요지(김건재 전문위원)

-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,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,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, 위원은 기획예산과장, 재무과장,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2인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음.
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고,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 하였음.

- 동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동 법령에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용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 타 : 없음